

#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'99-26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 : 1999. 5 . 29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## 개정이유

- 상위법인 주차장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민영주차장의 표시 및 주차장의 설치신고, 관리규정 신고사항 등이 폐지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 하고자 함.

## 주요골자

- 민영주차장 정의에 관한 근거법령을 상위법에따라 개정(안 제2조)
- 민영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을 폐지함(안 제3조)
- 거창군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주차장의 표시를 공영주차장에만 한정하여 규정 함(안 제5조)
- 민영주차장을 군수에게 신고후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설치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대로 개정(안 제7조 제2항)
-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관한조항을 폐지(안 제17조)

## 개정근거

- 주차장법 제12조, 제15조, 제18조, 제19조의3  
(법률 제5902호, 1999. 2. 8)
- 조례·규칙·규정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

#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2호 본문중 “법 제12조제2항”을 “법 제12조제1항”으로 한다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-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

제5조 조제목 “주차장의 표시”를 “공영주차장의 표시”로 한다

제7조제2항중 “민영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”를 “민영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”로 한다.

제17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적용범위 및 적의) ①~②(생략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생략</li> <li>2. ----- 법 제12조제2항 -----</li> </ol>	제2조(적용범위 및 정의) ①~②	현행과 같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현행과 같음</li> <li>2. ----- 법 제12조제1항 -----</li> </ol>
제3조 (주차요금 및 가산금)①	<p>공영주차장 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민 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법 제15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차장 관리자 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② 생략</li> <li>③ 생략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생략</li> <li>2. 생략</li> </ol> </li> </ol>	제3조 (주차요금 및 가산금)	①	<p>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② 현행과 같음</li> <li>③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현행과 같음</li> <li>2. 현행과 같음</li> </ol> </li> </ol>
제5조(주차장의 표시) ① (생략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 ~ 4 (생략)</li> <li>② (생략)</li> <li>③ (생략)</li> <li>④ (생략)</li> </ol>	제5조(공영주차장의 표시) ①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제7조(주차장의 설치등) ① (생략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② 민영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의 주 원 인이 되는 시설물 설치 허가시에 그 내 용에 포함되어야 한다.</li> </ol>	제7조(주차장의 설치등) ①	(현행과 같음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② 민영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 설 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 차장의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 설치허가시에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.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<p>제17조 (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) 제1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자는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일반이용시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부설주차장의 종류 :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</li> <li>2.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: 업무시설, 위탁시설, 판매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법정 의무대수보다 10대 이상 설치한 시설물</li> <li>3. 일반의 이용시간 : 별표1의 “주” 제3호에 의한 시간을 준용한다.</li> <li>4. 주차요금 :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주차장의 관리 규정으로 한다.</li> <li>5. 일반이용 주차장은 이용객의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도시미관과 건물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하며, 부설주차장 산정대수 기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은 일반이용의 제공에서 제외한다.</li> <li>6. 일반이용 주차장은 부설주차장과 구분하여야 하며,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는 곳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.</li> </ol>	<p>제17조 (삭제)</p>

현행	개정안
<p>7. 일반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자는 신고서에 다음 각목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.</p> <p>가. 건축물의 배치 및 출입차량의 동선 (건물이용 차량과 일반이용 차량 구분)</p> <p>나. 주차장 전체 평면도 및 동선</p> <p>다. 유료주차장 위치 및 면적</p> <p>라. 시설물 이용차량과 유료주차장의 관리계획</p>	

[별표 1]

##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

○ 급지별주차기본요금

(금액 : 원)

시간 급지	1구획 최초 30분까지	최초 30분 초과 15분당	회수권제 1일	정기주차권 (월)	
				주간제	야간제
1 급지	500	250	5,000	50,000	35,000
2 급지	300	150	3,000	30,000	21,000

○ 이용차종별 주차요금 적용 기준

승용차	승합차			화물차		
	15인승 미만	15~45인승 미만	45인승 이상	2.5톤 미만	2.5~11톤 미만	11톤이상
기본요금	기본요금	기본요금의 2배	기본요금의 3배	기본요금	기본요금의 2배	기본요금의 3배

(주) 1.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급지 : 노상주차장
  - 2급지 : 노외주차장
2.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1구획 최초 30분까지로 한다.
3.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,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.
- 4월 ~ 10월 08:00 ~ 20:00
  - 11월 ~ 3월 09:00 ~ 19:30
4. 적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의하되 이륜 자동차는 제외한다.
5. 이용차종별 주차요금 적용 기준은 1급지에 한한다.